

## 2. 직제규정

---

(2024.12.13. 개정)

# 직 제 규 정

2008.06.27. 제정  
2011.02.14. 개정  
2022.12.22. 개정  
2024.12.13. 개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이라 한다)의 조직과 업무 분담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협의회의 직제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## 제2장 조 직

**제3조(이사장)** 이사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.

**제4조(감사)**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.

- ① 협의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장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
- ② 협의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수하는 일
- ③ 협의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 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, 총회,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-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소집 또는 총회를 요구하는 일
- ⑤ 이사장이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,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사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(留止)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

**제5조(이사)** 이사는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**제6조(조직)** 협의회에 법학적성평가연구원과 사무국을 둔다. (조직도는 별표1 참조)

**제7조(직종 및 직급)** ① 직원의 직종은 임원, 연구직, 일반직으로 한다.

② 임원은 이사장, 이사 및 감사로, 연구직은 전문위원, 수석연구위원, 책임연구위원, 선임연구위원, 연구위원으로, 일반직은 사무국장, 부장, 차장, 과장, 대리, 주임, 사원으로 한다.

**제8조(기구 및 정원)** 협의회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.

**제9조(법학적성평가연구원)** ①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은 법학적성평가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법학적성평가연구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적성시험 관련 각종 연구개발
2. 적성시험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3. 법학적성평가연구원 관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적성시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 및 운영
5. 적성시험의 출제·인쇄·시행 등 관리
6.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
7. 기타 법학적성평가연구원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업무

**제10조(사무국)** ①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업무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사무국은 다음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를 수행한다.

1. 협의회 주요사업계획 수립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문서의 수발·관리 및 직인 관리
4. 직원의 임용, 급여, 상벌 및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
5.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6. 임원등기 및 소송업무
7.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8. 정부 및 국회에 관한 사항
9. 회계 및 자금운용관리
10. 고정자산 및 물품관리
11.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이 지원요청하는 사항
12. 기타 협의회 내의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③ 사무국은 예산 편성 및 결산과 관련하여 법학적성평가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위원회·자문위원

**제11조(위원회·자문위원회)** ① 협의회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 <2008.06.27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1.02.14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12.22.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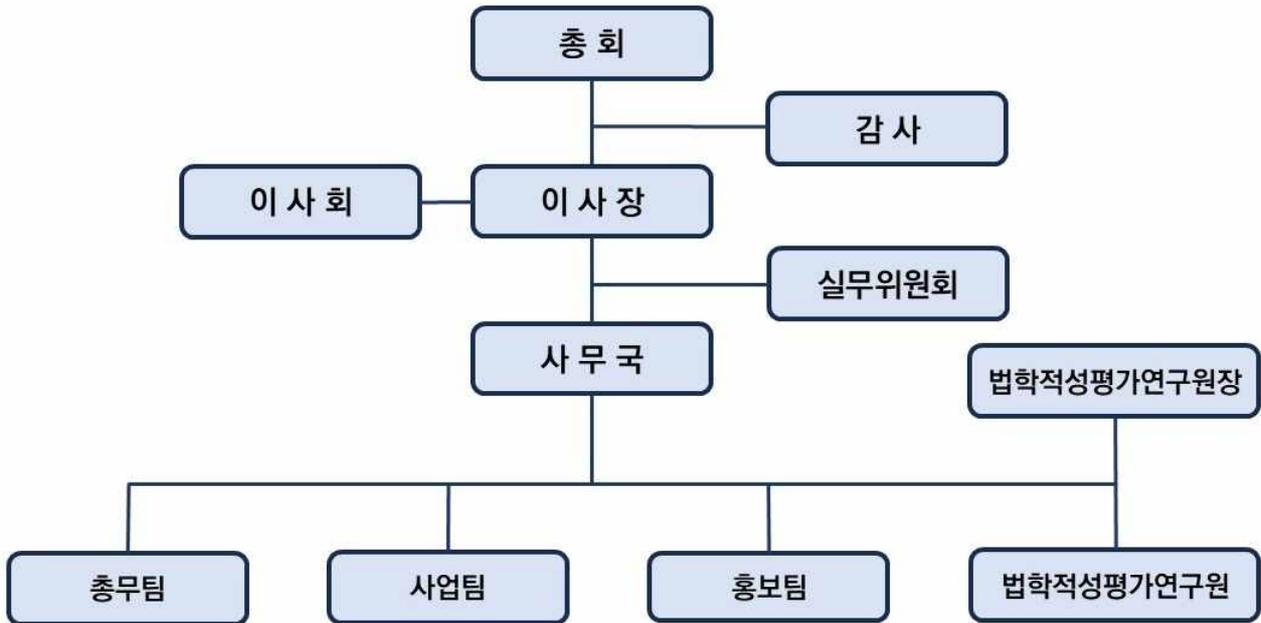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4.12.1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## 조직도



[별표2]

## 정 원 표

직 종	직 급	정 원
임 원	이사장	1
	이사(이사장 포함)	9
	감사	2
연구직	전문위원	
	수석연구위원	
	책임연구위원	
	선임연구위원	
	연구위원	
일반직	사무국장	
	부장	
	차장	
	과장	
	대리	
	주임	
	사원	
합 계		